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1. 의결주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퇴직유족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이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유족에게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9788호, 2023.10.31.공포, 2024. 5. 1.시행)됨에 따라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위하여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를 정하고 별지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 규정(안 제12조의2)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한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위해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와 신청서 별지 서식을 명시함.

나.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23호 서식)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2024. 00. 00.)

국방부령 제 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에 영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개월
------	------	------	-----

사 망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연월일	① 사망연월일

급 여 제 한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 관 계	사망자의 ()

제 한 유 형	※ 해당되는 제한 유형에 “✓” 표시하십시오.				
	[] 퇴직유족급여 신규 청구 시 다른 유족에 대해 급여제한 신청				
	[] 기존 수급자에 대해 급여제한 신청				
	[] 기존 수급자의 수급권 상실에 따라 수급권 이전 신청 시 다른 유족에 대해 급여제한 신청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주소(우편물 수령지) ※ 도로명(새길) 주소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휴대전화			자택전화	
	e-mail				
② 관 계	사망자의 ()			유족대표자 ()	※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유 족 ※ 유족대표자 포함	번호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④장해유무
	1			-	[] 있음
	2			-	[] 있음
	3			-	[] 있음
	4			-	[] 있음

⑤ 신 청 이 유	[작성 방식] 급여제한 심의대상자가 사망한 군인에 대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위나 배경,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시점포함)과 정도 등에 대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지 사용 가능)
-----------------------	---

「군인연금법」 제6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작성방법

- ①란(사망연월일)은 퇴직발령 후 사망한 경우에 추가 기재하십시오.
- ②란(사망자와의 관계)는 사망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자녀·부모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③란(주소)는 급여제한 관련 안내를 위해 반드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④란(장해유무)는 사망자의 장해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란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녀의 장해 상태가 「군인 재해보상법」 상 상이등급 제1급에서 제7급까지에 해당 시 25세 이상이라도 유족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상이등급 판정은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이 결정됩니다.
- ⑤란(신청이유)는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위나 배경,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시점 포함)과 정도 등에 대해 작성하여 주십시오. 군인 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군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2]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생후부터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거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양육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모로서의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위반 정도

첨부서류 안내

신청인 신분 확인	1.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 사망자의 배우자·부·모·25세미만자녀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유족인 배우자가 25세미만 자녀의 대표자로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망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25세이상 장해자녀의 경우(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추후 확정, 신청시 미제출) - 조부모 : 망인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25세미만 손자녀 : 망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 양부모·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이 단독친권으로 지정되어 그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친권자 또는 후견인 지정) 추가 첨부 ※ 유족이 25세이상 장해자녀, 손자녀·조부모의 경우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와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에는 부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부양사실인정예규」 별표1) 2.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 -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 및 자필서명을 첨부
양육 책임 이행 여부	3.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예시) 각 1부. - 주소를 같이 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 : 통장 사본 등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사소송 판결문 등) - 기타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망자의 유언, 형제자매 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의2(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u> <u>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퇴</u> <u>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u> <u>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u> <u>의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u> <u>에 영 제42조의2제1항 각 호</u> <u>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u> <u>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군인연금과	
연 락 처	(02) 748 - 6671